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39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은성(기소), 성유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규목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7. 1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크랙 버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개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 회사 업무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영리 목적 사용의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_____